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
(경유)

제목 의료광고 심의제도 관련 질의회신

1. 대한의사협회 대의광심 제1431-00024(2019.6.21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위 호로 질의하신 의료광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
가. 질의내용

- 의료광고 심의제도 시행(' 18.9.28.) 이전 진행한 의료광고의 의료광고 심의대상 판단 기준
- 의료광고 심의제도 위헌판결(' 15.12월) 이전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광고의 심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

나. 답변내용

- ' 18.3.27. 개정 공포된 의료법(' 18.9.28. 시행)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어, 의료법 제57제1항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 매체를 통하여 의료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다만, 개정법 시행일(' 18.9.28.) 이전 시행한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법 제56조(의료 광고의 금지 등)를 준수하는 등 현행 의료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진행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,
-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(' 18.9.28. 시행)이 후 시행하는 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, 개정법 시행일 이전 게재한 광고는 해당되 지 않으나, 의료광고의 특성상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의료광고의 경우, 현재 또는 미래시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해당 광고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의료법령을 준수하여 광고하고, 그렇지 않을 경우 광고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,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일 이후 기존 광고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광고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광고심을 진행 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, 이는 의료광고 심의제도 위헌판결 이전 의료광고 심의이력과 관계없이, 새로운 의료광고 심의제도가 시행된 2018.9.28.부터 기존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. 끝.

